

「정릉동 22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

우리 구 「정릉동 22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의 사업대행자(신탁사) 지정 요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성북구청장

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종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사업명칭 : 정릉동 226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정릉동 226-1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동운)
- 사무실 소재지 :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67, 1층 (정릉동)

3. 사업의 위치 및 면적

- 사업위치 : 서울시 정릉동 226-1번지 일대
- 사업면적 : 19,922.50㎡

4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사업의 착수예정일: 2029년 2월
- 사업의 준공예정일: 2031년 12월

5. 사업대행개시결정일 : 2026년 6월 26일

6. 사업대행자

- 법인명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(대표자 김범석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)

7. 대행사항

- 가.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·관리
- 나.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
- 다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2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
- 라.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(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)
- 마.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
- 바.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관리
- 사.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
- 아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41조 규저엔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
- 자.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
- 차. 총회개최
- 카. 기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조합 정관에서의 정한 업무

8. 기타사항

- 가.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하며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.
- 나. 사업대행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,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.